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개정에대한 건의(안)

의안 번호	74
----------	----

제출년월일 : 1996. 4. 13

제출자 : 김병환 의원
외 4인

1. 주 문

- 농림수산부의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개정 입법 예고안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반영 시키고자 건의서를 채택하고자 한다.

2. 제안이유

-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를 매각함에 있어, 매수자가 원할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동안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입법예고안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과 농림수산사업 실시요령에 따라 전업 농업인등 육성대상자에 농지매매 자금지원 연리 3%, 20년 균분상환제와는 공평성과 형평성을 잃고 있어 이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기간등의 조정건의와,
- 과거 관계법령의 불비로 어업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대호간척매립지 농어민들에 대한 간척지 분양가격 결정에 어업피해보상과 지균작업 노력비 보상차원에서 적절한 가격으로의 분양을 건의하고자 함.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개정에대한 건의서

먼저 농림수산부에서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 3항을 개정하여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을 매각함에 있어,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던 것을 매수자가 원할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 함은 농어민의 고충을 이해하는 시의 적절한 조치로 농림수산부의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법령개정을 환영하면서, 동법령의 입법예고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산시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법령의 입안과 시행(매각)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첫째,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을 매각함에 있어 매수자가 원할 경우 10년이내의 기간동안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지의 규모화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행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2조3항)과 농림수산사업 실시요령에 따라 전업농업인등 육성대상자에 대한 농지매매 자금지원, 연리 3% 20년 균분상환제와는 차이점이 큰것으로 법령 적용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환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농어민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꼭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입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간척지 분양관계 법령에 어업피해 보상과 지균작업에 대한 보상의 명문화와 대호간척매립지 분양가격 결정에 대한 주민 의견반영에 대하여는 대호지구사업 시행인가 당시('80.4.22)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법상 보상규정의 불비와 경직된 법령운용으로 맨손 어업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가, 최근 수산업법의 개정('90.8.1)으로 신고 어업에 대한 보상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의 개정 입안시에는 농어민들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하여 정부가 원성을 듣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어업 피해보상등을 미실시한 과거의 간척매립지에 대한 분양가격 결정시에는 어업피해보상과 간척지를 내 땅으로 알고 수년동안 자력으로 지균작업 및 염기제거에 심혈을 기울여 온 노력과 비용등을 고려하여 연고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법령운용에 적정을 기하여 삶의 터전을 떠나는 농어민이 없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4월 일

서산시의회 의장 김 제 경